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
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○ 제명 변경

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」

⇒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
○ 발생억제 책무 조항 신설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
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지자체 시책 협력
토록 함.

-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(안 제8조)
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함.
-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(안 제2조 및 제16조)
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 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여 사업자가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.
-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(안 제9조 및 제16조)
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함.

다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, 제14조, 제15조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 : '10. 12. 환경부
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표준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,
-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」를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과,
-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사업자와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 시책에 최대한 협력토록 함과,
- “감량의무사업장”을 “다량배출사업장”으로 명칭변경하고,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여, 음식물 쓰레기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이므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